

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 의 정관

2011년 10월 11일

제 1 조

인수자들은 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이하 “회사”)의 명칭 아래 가변자본형 투자회사의 자격을 갖춘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 2 조

회사의 존속기간은 무한하다. 다만 회사는 본 정관(이하 “본 정관”)의 개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방식에 따라 채택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 3 조

회사의 목적은 투자위험을 분산하고 주주들에게 투자자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서 양도성 증권과 기타 허용된 자산에 대한 투자하는 것이다.

회사는 투자신탁에 관한 2002년 12월 20일자 법률의 Part I(개정법률 포함) (이하 “법률”)에 허용된 최대 범위 내에서 상기 목적을 달성, 추진하기 위하여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1년 7월 1일자로 법률에 대한 모든 언급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2010년 12월 17일자 룩셈부르크 법(“2010년 법”)을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 4 조

등록된 사무소는 룩셈부르크 공국 Senningerberg 에 두고 필요에 따라 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의 결의로 룩셈부르크 내외에 자회사, 지점 및 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등록사무소를 룩셈부르크 내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

본점에서의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 또는 본점과 해외 지점 간의 연락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또는 군사적인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된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경우, 본점은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해외로 임시 이전될 수 있다. 그와 같이 본점을 해외로 임시 이전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국적은 변동되지 않으며 회사는 계속 룩셈부르크 기업으로 간주된다.

제 5 조

회사의 자본금은 무액면주식에 의하여 표창되며 본 정관 제 23 조에 정의되는 회사의 순자산 합계액으로 한다.

최소자본금은 1,250,000 유로로 한다.

이사회는 제 24 조에 따라 순자산액(“순자산액”)을 기준으로, 또는 제 23 조에 따라 결정되는 각 주당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완전 납입 주식을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으며, 기존 주주들은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우선인수권을 갖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적법하게 승인된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 또는 기타 적법하게 승인된 자로부터 인수 청약을 받고 및/또는 신주를 전달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받는 업무를 법률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위임할 수 있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각 종류에 속한 주식의 발행 대금을 제 3 조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이사회가 각각의 주식 종류에 관하여 수시로 결정하는 지역, 산업부문, 통화지역에 대응하는 자산, 특정 유형 또는 기타 특징을 갖는 유가증권이나 기타 자산에 투자한다.

보다 명확히 하위 위하여 전 항에서 “주식 종류”에 대한 언급은 2002 년 법 제 133 조(2010 년 법 제 181 조에 의해 대체됨)에서 의미하는 “하위펀드” 또는 “compartments”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각각의 종류(특정 종류의 주식은 동일한 투자정책에 따르는 주식을 말한다)에 속한 주식은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고 회사의 모집서류에 공개되는 판매, 상환 및 배분 수수료 (이하 “판매수수료 체계”), 이익배분정책 혹은 기타 특징을 달리 하는 하위 종류의 주식군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정관에서 “주식의 종류”은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하위 종류의 주식”도 의미한다.

여러 종류에 속하는 주식들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여러가지 통화로 표시될 수 있다. 단, 회사의 자본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 그 종류에 귀속되는 순 자산이 유로화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유로화로 전환하여 모든 종류의 순자산의 합계를 자본금으로 한다.

특정 종류의 주주들은 본 정관 제 30 조에 따른 정족수 및 의결 요건에 따라 해당일 현재 동 종류 주식의 순자산액을 해당 주주들에게 지급하고 주식을 일부 소각하여 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주주총회는 해당 종류(들)의 자산을 다른 종류의 주식에게 배정하고 해당 종류(들)의 주식을 그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며,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주들에게 지급하거나, 본 정관 제 6 조에 따라 단주에 대한 권리를 (결의에 의하여) 배정한다). 상기의 주주총회는 해당 종류(들)의 자산과 부채를 법률 Part I 또는 2010 년 법 Part I 에 의하여 등록된 다른 특셈부르크 투자신탁 또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유럽경제연합(EEA)에서 설립되거나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고 동 투자신탁의 주식이 해당 종목(들)의 주주들에게 배당되도록 결의할 수 있다. 또한 상기의 주주총회는 한 종목의 주식을 회사 또는 법률 Part I 또는 2010 년 법 Part I 에 의하여 등록된 다른 룩셈부르크 투자신탁 또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되는 보호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유럽경제연합(EEA)에서 설립되거나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2 종목 이상의 주식으로 분할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회사는 상기와 같은 결의 내용을 공고(혹은 경우에 따라 통지)해야 하며 공고시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새로운 종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상기의 공고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내 여러 종목의 주식들의 병합 (또는 구조조정) 결의는 특별한 정족수 요건없이 행사된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 해당 종목의 자산과 부채를 법률 Part I 또는 2010 년 법 Part I 에 의하여 등록되어 SICAV 의 형태로 설립된 다른 룩셈부르크 투자신탁의 한 종목 또는 여러 종목에 출자 (또는 구조조정)하기 위한 결의는 특별한 정족수 요건없이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 회사의 어느 주식 종목과 회사의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룩셈부르크 또는 유럽경제연합(EEA)의 공동투자기구가 발행한 주식 종목을 병합(또는 구조조정)하기 위한 결의는 특별한 정족수 요건없이 행사된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 다만,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투자신탁과의 합병 (또는 구조조정) 결의는 해당 종목(들)의 모든 주주들의 만장일치 찬성에 의해서 또는 대안적으로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또한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을 것을 전제로 동 출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해당 종목(들)의 주주들만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

특정 종목 주식의 순자산액이 5 천만 유로 또는 다른 통화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해당 종목의 자산이 경제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수준이라고 이사회가 결정하여 회사의 모집서류에 공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해당 종목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특정 종목 주식의 강제상환, 특정 종목 주식의 청산, 구조조정 또는 특정 종목 주식의 회사가 발행한 다른 종목 주식으로의 출자를 결의할 수 있다.

회사는 강제상환, 청산 또는 다른 종목 주식으로의 출자에 관한 결의 내용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또는 경우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해당 종목의 주주들은 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을 계속 요구할 수 있으나 회사의 투자설명서에 정해진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에 정해진 것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법률 Part I 에 의하여 등록된 다른 투자신탁에 출자하여 종결하기로 결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의는 상기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고되어야 하며 동 공고에는 다른

투자신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뮤추얼펀드 형태의 다른 투자신탁에 출자할 경우, 합병은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해당 종목의 주주들만을 구속한다.

또한 상기에 정해진 것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2 개 종목 이상의 회사 또는 법률 Part I 에 의하여 등록된 다른 투자신탁의 주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이 결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의는 상기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고되어야 하며 동 공고에는 상기 2 개 이상의 종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1 년 7 월 1 일자로 종목 간 합병에 적용되는 전 항의 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며 2010 년 법 및 그 하위규정에 명시된 UCITS 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종목 간 합병은 이사회가 결정하나, 이사회가 해당 종목의 주주총회에 합병 결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결의는 정족수 요건 없이 행사된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된다. 종목간 합병의 결과로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 그러한 합병은 정관 개정 에 필요한 정족수 및 과반수 요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어야 한다.

특정 종목의 청산 종료시 수익자들에게 배분될 수 없는 자산은 수익자들을 대표하는 수탁자가 보관한다.

제 6 조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될 수 있다. 회사는 무기명 주식의 경우 주권의 보유자를 해당 주식에 대한 완전한 소유자로 간주할 수 있고 기명식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명부(“주주명부”)에 해당 주식의 명의자로 등재된 자를 해당 주식에 대한 완전한 소유자로 간주할 수 있다. 회사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기타인이 어떠한 권리, 지분이나 청구권도 갖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단, 상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가 자신의 주식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을 청구할 적절한 권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사는 더 이상 무기명식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무기명 주권은 이사회가 정하는 액면에 따라 발행되며, 무기명 주식의 주주는 자신의 비용부담 없이 자신의 주권에 관하여 다른 액면의 주권으로의 교환 또는 기명 주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명 주식의 주주가 주권을 발행받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명 주식의 주주는 자신의 보유 주식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다. 기명주주는 자신이 합당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자신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둘 이상의 주권을 발행받을 수 있다. 주식의 양도, 상환 혹은 전환이 있는 후 보유 주식 잔여분에 대하여 발행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비용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주권은 회사의 두 명의 이사와 이사회로부터 수권받은 한 명의 임원에 의해 서명되어진다. (주권에 대한) 이사들에 의한 서명은 필사 서명, 인쇄된 서명 혹은 모사 서명일 수 있다. 수권받은 임원의 서명은 필사 서명이어야 한다. 회사는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형식으로 임시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이 있고 본 정관의 제 24 조에 정한 주금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만 주식이 발행된다. 청약자는 지체없이 확정 주권이나 상기한 보유 주식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다.

기명주식의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은 은행계좌이체 또는 우편환의 방법으로 회사의 주주명부(“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서면으로 이사들에게 통지된 주소로 이루어지고, 무기명주식의 주주에 대하여는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수시로 이사회가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급하거나 또는 회사가 선임한 지급대리인에게 무기명주주가 배당표를 제시할 때에 배당금을 지급한다.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어 배당 지급 통지가 있는 후 5 년내에 배당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배당은 상실되고 회사에 귀속한다. 배당이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지급시점까지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한다.

무기명 주식을 제외한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은 주주명부에 기록된다. 주주명부는 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한 1 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보관되며 주주명부에는 각 기명주식 보유자, 회사에 통지된 그의 거주지나 주소 및 보유 주식의 수와 종류가 기재된다. 무기명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양도는 주주명부에 기재된다. 단, 주식에 대한 소유권에 관계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서류를 등록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통상적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완전히 납입된 주식에 대하여는 회사를 담보권자로 하는 어떠한 담보도 설정될 수 없다.

무기명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인도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기명주식의 양도는 해당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및 회사에게 만족스러운 기타 증서를 회사에 인도되고, 회사가 해당 양도를 (주주명부에) 기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각 기명주주는 회사가 통지나 연락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주소는 주주명부에 기재된다. 주식의 공동 보유가 있는 경우 그 중 1 인의 주소만이 주주명부에 기재되고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만 통지가 송부된다. 주주가 상기한 주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주소로 통지나 연락이 전달 불가능하여 반송되는 경우 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 경우 해당 주주가 다른 주소를 회사에 제공할 때까지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혹은 회사가 수시로 기재하는 기타 주소가 해당 주주의 주소로 간주된다. 주주는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혹은 회사가 수시로 정하는 기타 주소로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신의 주소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청약자의 납입금에 의하여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단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되며 의결권이 없게 된다. 단, 그 경우 회사가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단주에 상응하는 배당이나 기타 배분을 받을 수 있다. 무기명 주식의 경우 완전한 주식(단주가 아닌 주식)을 입증하는 주권만이 발행된다.

회사는 회사가 발행한 하나의 주식에 대하여 1 인의 보유자만을 인정한다. 주식의 공동 보유의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공동 보유자들을 대표하여 1 인이 지정될 때까지 회사는 해당 주식에 기한 권리의 행사를 중지할 수 있다.

회사는 회사의 재량으로 공동 주주들 가운데 최초 등록된 주주만을 모든 공동 주주들의 대표자로 간주하여 그에게만 상환대금, 배분금 혹은 기타 지급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또한, 모든 공동주주들에게 상환대금, 배분금 혹은 기타 지급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 7 조

어떤 주주가 자신의 주권이 분실, 훼손 혹은 멸실되었음을 회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과 보증(보험회사가 전달하는 보증금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새로운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한 새로운 주권이 발행되는 경우 동 주권이 분실, 훼손 혹은 멸실된 최초 주권의 부분이라는 사실이 동 주권에 기재되며 최초 주권은 무효가 된다.

회사는 그러한 새로운 주권의 비용 및 그의 발행 및 등록 혹은 최초 주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한 모든 합리적 비용을 해당 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

이사회는 어떤 자가 (a) 어느 국가 또는 정부의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혹은 보유하도록 하지 않고 (b) 이사회의 의견으로서 회사가 원래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조세책임 또는 금전상의 불이익한 결과가 회사에 초래되도록 주식을 취득 혹은 보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조치(주식의 양도에 대한 제한조치는 제외)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어떤 인, 회사 혹은 법인 또는 (이하 정의되는) “미국인”이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는 아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a) (i) 주식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ii) 주식의 양도를 등록함으로써 회사 주식의 보유가 금지되는 자가 해당 주식을 직접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될 경우 그러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b)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그가 회사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의해 회사주식이 보유가 금지되는 자에 의해 보유되는 결과가 되거나 장래에 그런 결과가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정보(및 그를 입증하는 진술서)의

제공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 (c) 단독으로 혹은 기타인과 함께 회사 주식 혹은 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의 보유가 금지되는 자가 회사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강제로 상환할 수 있다.
- 1) 회사는 상환 대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주명부상 상환 대상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상기한 바와 같이 상환되어야 하는 주식, 상환가격 및 상환대금 지급장소를 기재한 통지(이하 "상환통지"라 함)를 송부한다. 상환통지는 요금선납의 등기우편으로 회사가 알고 있는 해당 주주의 최종 주소 혹은 회사의 장부에 기재된 최종 주소로 우편으로 송부한다. 해당 주주는 상환통지를 수령한 즉시 상환통지에 기재주권(주권이 발행된 경우) 또는 주식을 표창하는 증서를 회사에 전달할 의무가 있다. 상환통지에 기재된 일자의 영업시간 종료 후, 즉시 해당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며 그가 종전에 보유 혹은 소유한 주식은 취소된다.
 - 2) 상환통지에 기재된 주식의 상환가격(본 정관에서 "상환가격"이라 함)은 해당 종목의 회사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본 정관의 제23조에 따라 결정됨)와 같다.
 - 3) 상환대금은 해당 종목의 지정통화로써 해당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된 자에게 지급된다. 회사는 특셈부러그 혹은 기타 장소(상환통지에 기재됨)에 소재하는 은행에 상환대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주권 또는 주식을 표창하는 증서가 제출된 후에 상환대금의 지급이 이루어 진다. 상환대금이 예치된 후에는 해당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된 주주가 상기 은행으로부터 예치된 상환대금을 (이자 없이) 수령할 권리를 제외하고 상환통지에 기재된 주식에 대해 어떤 자도 추가적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 4) 어떤 자의 주식 소유권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혹은 상환통지 일자 현재 회사가 판단한 것과 다르게 주식이 소유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본 제8조에 의해 회사에 부여되는 권한의 행사가 무효로 되거나 그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없다. 단, 회사는 그러한 권한을 선의로 행사하여야 한다.
- (d) 회사 주식의 보유가 금지되는 자가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본 정관에서 "미국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미합중국 1933년 증권법 및 그 개정법률(이하 "1933년 증권법"이라 함)의 Regulation S 혹은 장래에 1933년 증권법의 Regulation S를 대체하여 미합중국내에서 유효할 기타 규정이나 법률에 정한 의미를 갖는다. 이사회는 상기 규정에 따라

“미국인”을 정의하며 그러한 정의를 회사의 모집서류에 공시한다.

이사회는 앞서 언급한 의미를 더욱 명확히 설명하거나 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회는 2010년 법 제174조에 정한 의미를 갖는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함)에게 특정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청약 신청자가 기관투자자 자격을 갖는다는 충분한 입증은 회사가 수령할 때까지 이사회는 기관투자자 몫으로 정해진 종목의 주식에 대한 청약의 승낙을 연기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 몫으로 정해진 종목의 주식 보유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언제든지 이사회는 (1)해당 주식을 (i) 기관투자자에게 한정되지 않는 종목의 주식으로서 (ii) 기관투자자에게 한정되는 종목의 주식과 투자대상(의심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의 면에서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단, 그러한 유사한 성질을 갖는 종목이 존재하여야 하고 기관투자자 몫으로 정해진 종목의 주식을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게 된 이유가 회사나 그 대리인의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함) 혹은 (2)본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로 상환하여야 한다.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기관투자자에게만 한정되는 종목의 주식을 기관투자자 자격을 갖지 않는 자가 보유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식 양도가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과는 별도로, 기관투자자 자격을 갖지 않는 자가 기관투자자에게 한정되는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러한 자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갖기 위하여 오인을 초래하거나 사실이 아닌 서류나 진술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혹은 기관투자자 지위의 상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손실 및 비용에 관하여 회사에게 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사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주 전체를 대표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들의 보유 주식이 속하는 주식 종목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회사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운영에 관한 행위를 명령하고 수행하며 인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 10 조

정기주주총회는 특셈부르그에 소재하는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혹은 소집통지에 기재된 특셈부르그 내의 기타 장소에서 매년 5 월 마지막 화요일 오전 11 시에 특셈부르그 법률에 따라 개최된다. 그러한 소집일자가 특셈부르그에서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정기 주주총회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소집된다. 이사회는 최종 판단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기 주주총회는 외국에서 개최될 수 있다.

특셈부르그 법에 의거 허용되는 경우 그리고 동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기재된 바 이외의 일시나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임시주주총회 또는 종류 주주총회는 각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된 장소 및 시간에 개최된다.

제 11 조

회사의 주주총회는 본 정관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족수와 통지기간에 따라야 한다.

주식의 종목 혹은 종목 내 주당 순자산가치에 관계없이 1 주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단, 본 정관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주주는 서면으로 혹은 팩스나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행위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한 대리인은 주주총회가 재소집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단, 그러한 대리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에 의하여 달리 요구되거나 본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행사된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 진다. 행사된 의결권에는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기권 혹은 무효처리된 의결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인은 적법하게 수권받은 임원이 서명하여 대리권 입증 서류에 서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의안을 기재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주소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지하는 소집통지에 따라 소집된다.

특셈부르그 법에 의거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집통지는 *Memorial, Recueil des Societes et Associations of Luxembourg*, 특셈부르그 신문 및 기타 신문으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신문에도 공고된다.

특셈부르그 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주주총회통지에는 주주총회를 위한 정족수와 과반수가 주주총회일 전 특정 일시(“기준일”) 현재 기발행주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권리는 이러한 기준일 현재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제 13 조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들은 회사의 주주일 필요가 없다.

이사회는 과반수는 영국에서의 조세 목적상 비거주자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선임하고 그 임기는 차기 정기 주주총회가 종료되는 때와 이사들에 대한 승계인이 선임되는 때 가운데 더 늦은 때까지 이다. 단, 주주들이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 이사는 언제든지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해임 및/또는 교체될 수 있다.

이사의 사망, 사임에 의하여 혹은 다른 이유로 이사직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 이사들은 다음 주주총회까지의 잔여 임기를 채울 이사를 과반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회는 이사들 가운데 1 인의 의장과 1 인 이상의 부의장을 선임한다. 또한 이사회는 총무담당임원(이사일 필요가 없음)을 선출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사회는 이사 2 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장소(영국이외의 장소)에서 소집된다.

의장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주재하고 의장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주주들 혹은 이사회는 임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소집통지는 서면으로 소집시간으로부터 늦어도 24 시간 전까지 모든 이사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단,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집통지에 그러한 긴급한 사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각각의 이사들은 서면으로 혹은 팩스나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동의하여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종전에 이사회 결의로 채택된 일정에 정한 장소와 시간에 소집되는 개별적 이사회 모임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집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사는 다른 이사를 서면으로 혹은 팩스나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신의 대리인으로 행위하게 할 수 있다. 이사 1 인은 1 인 이상의 다른 이사들을 대리할 수 있다. 이사는 서면으로 혹은 팩스나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는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에서만 행위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개인적 행동으로 회사를 구속할 수 없다.

(a)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이사가 2인 이상이고 (b)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이사들의 과반수가 영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는 적법하게 심의하고 행위할 수 있다. 정족수와 과반수 산정 목적상, 원격회의나 비디오 컨퍼런스 혹은 기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수단은 효율적인 이사회 출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토의가 방해 받지 아니하고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회의의 기술적인 요소를 충족한 것이므로, 그러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원격지에서 개최된 이사회는 회사의 등록사무소에서 개최된 것으로 본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으로 출석한 다른 이사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채택된다. 이사회에서 결의에 대한 찬부가 동수인 경우 의장은 결정 의결권을 갖는다.

이사회 결의는 모든 이사가 회람된 원본에 자필 서명한 서면으로 혹은 팩스나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서명하여 동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든 서면은 함께 이사회 결의를 입증하는 의사록을 구성한다.

이사회는 총괄 관리자, 총무담당임원, 부 총괄 관리자, 부 총무담당임원 혹은 회사의 운영과 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포함하여 회사의 임원을 수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그러한 선임을 수시로 취소할 수 있다. 임원은 회사의 이사나 주주가 아니어도 된다. 선임된 임원들은 본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부여하는 권한과 업무를 부여받는다.

이사회는 회사의 일일 경영과 업무를 영위할 권한 및 회사 정책 및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개인이나 법인(이사가 아니어도 됨)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자신의 권한, 자격 및 재량권을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이사 여부를 불문함)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1) (i)해당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회사의 이사여야 하고 (ii)해당 위원회가 그 권한, 자격이나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정족수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가 회사의 이사여야 하며 (2)이사회 위원회로서 그 위원의 과반수가 영국에 거주하는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상기한 위임을 받을 수 없다. 이사회 위원회는 영국에서 소집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가 영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그러한 소집은 적법하지 않다.

제 15 조

이사회 의사록은 해당 시점의 이사회 의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사법 절차 혹은 기타 용도로 작성되는 이사회 의사록의 사본이나 초록은 해당 시점의 이사회 의장, 총무담당임원 혹은 2인의 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이사회는 위험분산의 원칙에 따라 회사정책, 투자정책, 경영의 진로 및 회사의 업무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는 해당 시점에서 회사의 투자에 적용될 제한 조건을 법의 1 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한 제한 조건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a) 회사의 차입 및 그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
- (b) 형식 및 종목별로 회사의 자산 중 얼마를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비율과 형식 및 종목별로 회사가 특정 유가증권 중 얼마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비율.

이사회는 회사가 (i) 법률에 규정된 규제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거래가 승인된 단기금융상품 및 양도성 증권, (ii) 유럽연합 회원국내에 소재하는 다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기금융상품 및 양도성 증권(단, 해당 시장이 규제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인정되는 시장으로서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어야 함), (iii) 기타 국가로서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미주대륙 및 아프리카에 소재하는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공식적으로 상장되었거나 (iv)에서 언급한 국가내의 다른 규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단, 해당 시장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규제를 받으며 인정되는 시장으로서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어야 함) (v) 최근에 발행된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단, 발행 조건에 발행으로부터 1년 안에 상기에 언급된 증권거래소나 기타 규제된 시장에 공식 상장 신청될 것이 요구되어야 함) 그리고 (vi) 이사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고 회사의 모집서류에 공개되는 제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타 양도성 증권, 증서나 기타 자산에 대하여 투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위험분산의 원칙에 따라 회사 순자산가치의 100% 이내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그 지방정부, 감독기관이 승인할 수 있는 회사의 모집서류에 명기된 유럽연합 비회원국, 또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공적인 국제기구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보증되는 양도성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단, 회사가 이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6 차례 이상의 상이한 발행절차에서 발행된 증권을 보유하여야 하며, 한 번의 발행절차에서 발행된 증권의 가액이 회사의 총순자산의 30%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회사의 모집서류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회사의 어느 종목에 속하는 주식의 순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UCITS 및 여타 UCI 의 수익증권이나 주식에 투자한다.

이사회는 회사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현금등가물로 결제되는 상품을 포함하여) 및 /또는 법 제 41 조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 금융지수, 이자율, 환율, 통화가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의 모집서류에서 공시되어 있는 대로 회사의 투자목적에 따라 회사가 투자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사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지수 및/또는 채무증권지수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투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단 관련 지수는 충분히 분산된 종목을 편입하여야 하고, 적절한 기준지표이며 적절한 방식으로 고시되어야 한다)

2011년 7월 1일자로 룩셈부르크 법령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사들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룩셈부르크 관련 법령에 의거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다만 회사의 모집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i) 어느 종목을 자펀드(“자펀드”) 또는 모펀드(“모펀드”)로 설정하거나, (ii) 기존 종목을 자펀드로 전환하거나 또는 (iii) 자펀드의 모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또한 룩셈부르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만 회사의 모집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주식 종목은 하나 이상의 주식 종목이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예정인 주식을 매입, 취득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룩셈부르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러한 주식에 부여된 의결권은 해당 종목이 이러한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행사가 중지되며 당해 종목의 가치는 2010년 법에서 부과하는 최소 순자산 기준을 확인할 목적상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산정시 고려되지 아니한다.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을 본인의 자격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회사로부터 매입, 대여받을 수 없으며, 회사에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거래가 본 정관에 기재된 제한규정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제한규정에 부합하며 (i) 유가증권의 경우 유가증권의 가격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유가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호가에 의하여 또는 이사회가 수시로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결정되거나 또는 (ii) 대출의 경우 그 이자율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금융시장에서 수시로 결정되는 이자율을 고려한 경쟁적 이자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보관기관, 대리인, 명의개서대리인, 등록사무인, 그 수권된 대리인 및 그들의 임직원, 이사 혹은 그 주요주주 (이사회가 알기로 자신 또는 자신이 지명한 자의 명의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이사회는 본 정관 25 조의 규정에 따라 두 종목 이상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자산 집합의 전부나 일부에 집합적으로 투자하고 그를 운용할 수 있다. 본 정관 25 조에 의하면 자산집합의 각 투자 부문에 대하여 그러한 투자 및 운용을 할 수 있다.

회사의 운영 및 관리 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보다 다각화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회사 자산의 전부나 일부가 룩셈부르크의 다른 투자신탁과 함께 운용되도록 결의할 수 있다.

회사의 투자는 적절한 관할에 설립되고 회사만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운용 행위를 영위하는 완전 소유 자회사를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 주된 목적은 조세 부담을 효율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것이나 다른 목적도 있다. 회사가 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자회사가 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운용, 자문 또는 판매만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 출자지분보유자의 요청에 따른 출자지분의 상환에 관하여는 법률의 제 48 조 1 항과 2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정관에서 “투자(물)” 및 “자산”을 언급하는 경우, 이는 상기의 자회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나 수익목적으로 직접 보유되는 자산 혹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나 수익목적으로 간접 보유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제 17 조

회사의 1 인 이상의 이사나 임원이 어떤 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거나 그 회사의 이사, 제후선이나 임직원이라고 하여 회사와 해당 회사간의 계약이나 기타 거래가 영향을 받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사업상 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회사의 임직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동시에 회사의 이사나 임원인 자는 해당 회사와 그러한 관계/연관을 갖고 있다고 하여 해당 계약이나 기타 사업 관련 사안을 고려하고 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위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회사의 거래에 개인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사나 임원은 그러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알려야 하며 그러한 거래를 고려하거나 그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한 거래 및 그에 대한 이사나 임원의 이해관계는 차기 주주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단, 본 조항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상활동과 관련된 이사회의 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개인적 이해관계”는 이사회가 수시로 임의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회사나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나 법인에 관련되는 사항, 입장 혹은 거래에 대한 이해관계나 그와의 관계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제 18 조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에 의한 중과실 또는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어떠한 조치, 소송 혹은 절차에서 판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나 임원이 현직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라는 이유 혹은 과거에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었음을 이유로 (혹은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회사가 주주이거나 채권자이고 그로부터 배상 면책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된 경우 그러한 회사의 현직 이사나 임원이라는 이유 혹은 과거에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된 조치, 소송 혹은 절차와 관련하여 해당 이사, 임원, 그의 상속인, 유언집행인 및 관리인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회사는 해당 이사, 임원, 그의 상속인, 유언집행인 및 관리인에게 배상하고 면책하여야 한다. 합의가 되는 경우 회사는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배상면책의 대상이 되는 이사나 임원 등이 직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회사가 통지받는 합의 사안에 관해서만 배상면책이 제공한다. 상기한 권리는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갖는 기타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 19 조

회사는 2 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서명하는 경우 혹은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인(들)이 (공동으로) 서명하는 경우 그에 구속된다.

제 20 조

회사는 법률 제 113 조(2011년 7월 1일자로 2010년 법 제 154조에 의해 대체됨)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승인된 기업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승인된 기업 감사인”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선임하며 그 임기는 차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업 감사인”의 승계인이 선임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 21 조

아래에 상세히 규정되는 바와 같이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주주는 언제든지 자신이 보유하는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주주는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에 혹은 회사가 주식의 상환 대리인으로 선임한 기타 인이나 기관에 회사의 모집서류에 정한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취소불능의 서면(또는 회사가 수락할만한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입증되는 요구서)으로 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주식에 대한 주권(주권이 발행된 경우)과 적절한 양도나 이전 증빙(기명식 주식의 경우) 및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배당쿠폰(무기명식 주식의 경우)을 첨부하여 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회사가 요청한 정확한 주식포기 서면을 수령한 일자로부터 통상 7 은행영업일 내에 상환가격이 지급된다. 상환가격은 본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해당 주식 종목에 대한 순자산가치에서 회사의 모집서류에 정한 상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단, 상환가격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10단위에 서 버림한다. 회사의 모집서류에 이연된 판매수수료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의 주식인 경우 상환가격에서 그러한 이연된 판매수수료가 차감된다.

또한, 회사의 모집서류에서 정한 거래에 대하여 희석화 수수료(dilution levy)가 부과될 수 있다. 희석화 수수료는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여 회사의 모집서류에 공시한 바와 같은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전환이나 환매 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비용, 경비 및 유가증권 가격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어느 평가일(이하 정의됨)에 어느 주식 종목에 발생한 환매 및/또는 전환 요청이 당해 종목의 순자산액의 일정 금액이나 비율(이러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은 이사회가 수시로 정하여 회사의 모집서류를 통해 공시함)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모집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익평가일에 처리되도록 그러한 환매 및/또는 전환 요청을 연기할 수 있다.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 하에서 상환대금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이 투자된 시장에서 외환통제나 유사한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투자물의 판매대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서 최장 30 은행영업일(회사에 대한 홍콩의 증권 및 선물위원회의 승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30 일)의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상환대금은 해당 주식 종목의 기준통화 또는 회사의 모집서류에 정한 기타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통화로 지급된다.

이사회는 특정 종목의 주식에 대한 상환청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지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종목의 회사주식에 대한 상환대금 지급 기간, 그에 대한 통지기간 및 그 적용 조건은 해당 주식의 판매에 대한 회사의 모집서류에 공고된다.

이사회는 상환청구를 수락하고 상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적법하게 수권받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 혹은 기타 적법하게 수권받은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환되어질 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치로서 회사의 모집서류에 정한 순자산가치에 해당하는 포트폴리오의 투자물을 상환을 요청하는 주주들에게 배정함으로써 상환청구의 전부나 일부에 현물로 응할 수 있다.

법률 상 요구되는 경우 상기한 상황이 있는 경우 회사의 감사는 그에 대하여 특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는 상환되는 주식의 수, 액면금액 및 그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결정한 필요 자산 출자분의 가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보고서(발행된 경우)에서 감사는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결정하는 절차와 동일한 자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물 상환은 모든 상환주식의 순자산가치 총액이 주식 종목당 최소 10,000,000 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회사가 수락할 수 있다. 단, 이사회가 해당 시점에서 달리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물상환의 구체적 비용, 특히 특별감사보고서(발행된 경우)의 비용은 현물상환을 청구하는 주주 혹은 제 3 자가 부담하며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현물상환이 이사회 의의견으로 회사에 이익이 되거나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환청구가 이루어지면 본 정관의 제 24 조에 따라 상황이 중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가 불가능하다. 상환청구가 취소되지 않은 경우 상환은 상환 중지 종료후 최초 평가일에 이루어진다.

주주는 자신이 보유하는 종목의 주식 전부나 일부를 다른 종목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전환가격은 해당 종목의 주식에 대한 각각의 순자산가치로 한다. 단, 이사회는 회사의 모집서류에 정한 대로 전환의 빈도 등에 관하여 여러 종목들 간에 제한규정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의 모집서류에 정한 수수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전환할 수 있다.

어떤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주주가 전환대상 주식에 대한 종전 거래를 완전히 결제한 경우에만 전환이 허용된다.

1 인의 주주가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최소보유금액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상환이나 전환할 수 없다. 단, 이사회가 달리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식의 상환이나 전환으로 인하여 한 종목에 대한 1 인의 주주의 보유주식 가액이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최소보유금액 미만으로 감소하게 될 것인 경우 해당 주주는 해당 종목의 모든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환이나 전환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하에서 7 일내에 상환대금을 지급하거나 전환을 이행하기에 회사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환대금 지급이나 전환은 7 일의 기간 이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조기에 (상환대금의 경우 이자 지급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에 대한 홍콩의 증권 및 선물위원회의 승인이 유효한 경우 늦어도 30 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사회는 (자신이 수시로 결정하고 회사의 모집서류에 공고되는) 최소보유금액 미만의 가액인 보유 주식을 강제적으로 상환 혹은 전환할 수 있다.

회사가 상환하는 회사의 주식은 소각된다.

본 정관의 상기 제 5 조의 규정대로 특정 판매수수료 체계 혹은 특정 배분정책에 속하는 주식은 동일한 판매수수료 체계 혹은 동일하거나 상이한 분배정책에 속하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무기명주식의 주주가 전환 또는 상환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대리인에게 해당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회사는 수시로 각 종목의 주식의 순자산가치, 인수가격 및 상환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최소한 월 2 회 이상 (이러한 순자산가치의 결정일을 “평가일”이라 함)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여 이를 회사의 모집서류에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아래의 경우 어떤 종목에 속한 주식의 순자산가치, 인수가격 및 상환가격의 결정, 주주에 대한 동 주식의 발행, 주주로부터 동 주식의 상환 및 동 주식의 전환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 a) 회사의 관련 종목의 상당부분이 투자되어 호가되고 있는 주요 증권거래소 또는 다른 정규시장의 폐쇄 또는 거래 제한 또는 정지 기간;
- b) 관련 종목의 투자의 처분 또는 평가를 불가능하게 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및 존속;
- c) 회사의 투자자산의 가격 또는 가치 또는 어느 시장 또는 증권거래소의 현재 시가 또는 가치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통신수단의 두절;
- d) 상환대금의 준비를 위한 유가증권의 현금화 또는 송금이 불가능한 때 및 주식의 상환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이전이 정상적 환율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경우;
- e) 회사 또는 주식 종목을 해산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는 회사 또는 해당 주식종목의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통지가 있는 날 혹은 그 다음날;

- f) 평가를 준비·이용하거나 향후 평가를 행함에 있어서 특정 종목에 귀속되는 회사 투자물의 상당부분의 평가액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경우;
- g) 순자산가치, 인수가격 등의 결정을 잠정적으로 중지하지 않을 경우 회사나 그 주주들이 조세책임을 부담하거나 기타 여하한 금전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 h) 해당 주식 종목 자산의 상당 부분이 투자된 피투자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및/또는 환매가 중지되는 기간 동안.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가 정한 신문에 위 중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회사의 주식의 상환이나 전환을 요구하는 주주에게 제 21 조에 명시된 상환이나 전환 요구서(또는 회사가 수락할만한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입증되는 요구서)를 제출하는 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어떤 종목에 관한 중지는 다른 종목의 순자산가치, 인수가격, 상환가격의 계산, 발행, 발행, 상환 및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2010 년 법에서 정한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식의 매입이나 환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제 23 조

각 종목의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1 주당 해당 종목의 기준통화(및/또는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기타 통화)로 표시되고, 평가일과 관련하여 각 종목당 회사의 순자산가치, 즉 각 종목당 회사의 자산가액에서 해당 종목의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각 종목의 주식의 인수 및 상환가격은 1 주당 해당 종목의 기준통화 (및/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 통화)로 표시되고, 동 가격은 평가일에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에 의해 조정되고 평가일자로 계산되는 해당 종목의 1 주당 순자산가치로 결정된다. 인수가격 및 상환가격은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10 단위에서 반올림 또는 버림한다

평형계정이 운영되는 경우, 평형금액이 지급된다.

다른 종목의 주식의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다음 방식으로 행해진다:

A. 회사의 자산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현금, 미수금, 예금 및 이자
- (b) 받을 어음 및 받을 금액(유가증권매각 매수대금 중 미회수분 포함)

- (c) 유가증권, 주식, 채권, 옵션, 신주인수권, 기타 파생상품, 워런트, 공동투자기구가 발행한 수익권이나 주식 및 기타 회사 소유의 투자자산
- (d) 회사에 알고 있는 한도에서 회사가 받을 현금 또는 현물의 배당금 및 분배금 (회사는 거래 선배당 또는 선권리 같은 거래 관행으로 인한 증권의 시장가액의 변동의 평가를 조정할 수 있다)
- (e)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에 발생한 이자
- (f) 감가상각 되지 않은 회사의 예비비용, 단 그러한 예비비용은 회사의 자본에서 직접 감가 상각될 수 있다
- (g) 선급비용을 포함한 모든 기타 자산

자산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현금, 예금, 받을 어음, 선급금, 현금배당 및 발생이자 그 전액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 (2) 유가증권, 금융파생상품 및 자산은 해당 유가증권 또는 자산이 거래되는 증권거래소 또는 정규시장에서의 최종 시가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해당 유가증권 또는 자산이 하나 이상의 증권거래소 또는 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동 유가증권 및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 (3) 어느 유가증권이 증권거래소나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최종 시가가 유가증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관주의로 결정한 추정 매매가격에 의한다.
- (4)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파생상품의 가치는 회사의 모집서류에 자세히 기재된 바와 같은 시장관행에 의한다.
- (5)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주식은 가장 최근의 순자산가치에 근거하여 그 가치를 산정한다.
- (6) 유동 자산 및 금융시장 증서들은 명목가치에 발생이자를 더하여 또는 상환비용에 근거하여 가치 산정한다.
- (7) 상기한 가치평가방법이 특정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가치평가 방법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러한 가치평가방법이 회사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용하기에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이는 경우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가치평가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가치평가방법을 확정할 수 있다.
- (8) 각 주식 종목의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된 자산 혹은 부채는 은행이나 기타 공인된 금융기관이 호가한 그 당시 환율(spot rate)로 그 가치를 평가한다.

B. 회사의 부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a) 모든 차입금, 어음 및 기타 미지급금
- (b) 자산운용회사, 보관회사 및 회사의 기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보수를 포함한 모든 관리 운영 비용

- (c) 미지급배당금 등 기한의 도래 여부를 불문한 회사의 모든 미지급 부채
- (d) 평가일 현재 미지급 세금에 대한 총당금과 기타 유동화 비용 중에서 이사회가 승인한 총당금 및 준비금
- (e) 회사 주식으로 표시되는 채무를 제외하고 여하한 성질의 회사의 기타 채무. 채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사회는 설립비용, 투자자문인, 투자관리인, 이사들의 보수와 현금지급경비, 회계사, 보관자, domiciliary, 등기인, 명의개서대리인, 지급대리인, 등기장소에서의 고정대리인, 회사가 고용한 기타 대리인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비용,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거래소 상장 및 기타 정규시장에서의 거래 비용, 법률 및 감사서비스, 고용, 인쇄, 보고, 공고 비용, 광고비, 사업설명서, 설명메모, 등록서의 준비와 인쇄, 세금이나 정부요금, 기타 운영비, 자산매매비용, 이자, 은행요금, 중개, 우편, 전화 및 텔렉스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매년 또는 기타 기간 동안 예측된 수치를 근거로 미리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해당기간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그것을 발생시킬 수 있다.

채무 평가를 함에 있어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운영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일년 단위 또는 기타의 단위 기간으로 평가하고 그 기간 동안의 비용을 일정 비율로 그 기간으로 나눔으로써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 및 기타 비용을 적법하게 산출할 수 있다.

회사나 이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차활용거래 관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 등), 이사회는 회사의 자산 가치를 조정하기 위해 회사의 모집서류에 자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공정한 가격결정 절차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 각 종목 주식에 대한 자산집합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정된다.

- a) 각 종목의 주식 발행 대금은 해당 주식 종목의 집합자산으로 회사 장부에 기록되고, 해당 주식 종목에 속하는 자산, 부채, 소득 및 지출은 본조에 따라 위 집합자산에 기록된다.
- b) 자산이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러한 파생자산은 그것이 발생된 동일집합의 자산으로 회사의 장부에 기록되고, 자산의 재평가 시 가치의 증가나 감소는 해당 집합에 기록된다.
- c) 회사가 특정집합의 자산 또는 특정 집합의 자산과 관련하여 취해진 행위와 관련한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부채는 자산집합에 할당된다.
- d)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가 특정 집합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는 각 집합자산의 발행주식총수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모든 집합자산에 비례적으로 할당되고, 그 금액이 미미한 경우 모든 집합자산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감사들과 협의한 이후 해당 상황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방식으로 중요한 비용을 할당할 수 있다.

e) 어떤 종목의 주식에 관해 결정된 배당을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정을 위한 기준일에 해당종목의 순자산가액은 해당종목의 분배 방침에 따라 해당 배당금액만큼 감소하거나 증가한다.

본 정관 5 조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된 바와 같이 동일 종목 주식내에서 둘 이상의 하위 종목이 창설되었다면, 이상에 규정된 할당은 하위종목에 유추 적용 된다.

D. 자산과 부채의 각 집합은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양도성 증권과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타 자산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고 동일집합내의 각 종목의 주식에 대한 권한은 이하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변경된다.

그리고 각 집합 내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특정 종목의 주식들을 대신하여 특정 종목의 자산이 해당 집합에 관련된 모든 주식 종목에 공통된 포트폴리오로부터 분리되어 유지된 채 보유될 수 있고, 해당 종목을 대리하여 특정 부채가 인수될 수 있다.

동일한 자산집합에 관련된 각 종목에 공통적이고 각 종목의 주식에 할당되어야 하는 포트폴리오의 비율은 종목특정비용의 지급과 발행, 상환, 분배, 종목특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현이나 현가 대금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하에 규정된 평가규칙은 유추 적용 된다.

각 종목의 주식에 할당될 해당 집합의 공통 포트폴리오의 순자산가액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1) 각 종목에 할당된 공통 포트폴리오의 순자산가액의 최초의 비율은 새 종목의 주식의 최초 발행 시에 각 종목의 각각의 주식수에 비례한다;
- 2) 특정 종목의 주식의 발행 시에 수령한 발행대금은 공동 포트폴리오에 할당되고 해당 종목에 속하는 공동 포트폴리오의 비율의 증가를 가져온다;
- 3) 한 종목에 관해, 회사가 특정 자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주식종목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초과하는 비용부분 포함) 특정비용을 지급하거나 특정종목의 주식에 관해 특정분배를 하거나 상환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종목에 속하는 공동 포트폴리오의 비율은 해당종목의 특정자산, 해당종목을 대신하여 지급된 특정비용, 해당 종목의 주식의 상환 시 지급된 상환가격에 의해 감소된다.
- 4) 종목특정자산의 가액과 종목특정부채의 금액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가 관련하는 주식종목에만 속하고 이것은 해당 특정 주식 종목의 주당 순자산가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E. 각 주식 종목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평가일 현재 해당 주식 종목의 순자산액을 해당 종목에 대해 발행된 주식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순자산액은 거래 스프레드를 포함한 거래 비용, 금융수수료 및 주주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 영향을 고려하여 이사회 또는 이의 대리인인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F. 이 조항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a) 본 정관 21 조에 의해 상환 되어야 하는 회사의 주식은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고 평가일이사회가 특정한 시간 이후 지급 시까지 즉시 고려되어야 하고 회사의 채무로 간주된다.

(b) 해당 종목의 주식당 순자산가액이 계산되는 표시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현된 회사의 모든 투자, 현금 잔액 및 기타 자산은 해당 종목의 주식의 순자산가액의 결정을 일시에 유효한 시장비율이나 교환비율을 고려한다.

(c) 해당 평가일에 회사를 위해 계약이 체결된 증권의 매매의 효력이 가능한 한도에서 발생한다.

제 24 조

회사가 주식인수를 제안할 경우에는 해당주식이 인수 요청되고 매각되는 주당가격은 해당종목의 주식을 위해 이상에서 정해진 인수가격을 기초로 한다. 그렇게 정해진 가격은 해당인수가격이 결정된 일자로부터 7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이사회가 정한 기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의 모집서류에서 정한 거래에 대하여 희석화 수수료(dilution levy)가 부과될 수 있다. 희석화 수수료는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여 회사의 모집서류에 공시한 바와 같은 순자산가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매입 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비용, 경비 및 유가증권 가격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판매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 인수가액은 이사회가 승인한 때에 해당법률에 따라 현물 출자된 자산의 가액을 확인하는 회사 감사인의 특별감사보고서에 관해 회사의 투자방침과 투자제한과 일치하는 이사회가 수용할 만한 회사 증권에 출자함에 의해 지급될 수 있다.

제 25 조

1. 이사회는 그렇게 하기로 각각의 투자부분에 관해 적절한 경우에 집합된 것을 기초로 하나 이상 종목의 주식을 위해 설정된 자산 집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참여펀드”)를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다. 확대자산집합 (“확대 자산 집합”)은 우선 각 참여펀드로부터 현금이나 (아래 언급된 제한에 따라) 다른 자산을 그것에 이전함에 의해 형성된다. 그 이후 이사회는 확대자산집합에 추가로 이전할 수 있다. 이사회는 관련 참여펀드의 참여금액까지 확대자산집합에서 참여펀드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현금이외의 자산은 그들이 관련 확대자산집합의 투자부분에 적합한 경우에만 확대자산집합에 할당될 수 있다.

2. 확대자산집합에 참여펀드의 참여는 확대자산집합의 동일가치의 개념단위 (“단위”)언급에 의해 측정된다. 확대자산집합을 형성하면, 이사회는 자신의 재량으로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통화로 표현되는 단위의 최초가치를 결정하고 출자 된 현금금액 (또는 기타 자산의 가액)과 동일한 추가치를 가진 각 참여펀드에 할당해야 한다. 단주는 회사의 모집서류에 자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산정된다. 그 이후 단위의 가치는 (아래에 규정된 대로 계산된) 확대자산집합의 순자산가액을 존재하는 단위수로 나눔으로써 결정된다.

3. 추가 현금 또는 자산이 확대자산집합에 출자되거나 철회될 때, 관련 참여펀드 단위의 할당은 출자되거나 철회된 현금이나 자산의 금액을 단위의 현재치로 나눔으로써 결정된 단위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다. 출자가 현금으로 행해지는 경우, 계산에 있어 이사회가 관련 현금을 투자함에 있어 발생하는 부담을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금액만큼 감소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4. 확대자산집합에 출자, 철회, 일부를 형성하는 자산의 가치 및 확대자산집합의 순자산가치는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단 이상에 언급된 자산의 가액은 출자나 철회 일자에 결정된다.

5. 확대자산집합의 자산에 관해 수령한 소득성질의 배당, 이자 및 기타 배분은 수령 시, 확대자산집합의 자산에 대한 각각의 권한에 비례하여 참여펀드에 즉시 입금된다.

제 26 조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이다. 회사의 회계장부는 유로 혹은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기타 통화로 표시한다. 본 정관의 제 5 조에 규정된 다른 종목들이 있는 경우 및 그 종목 내의 회계가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 그러한 회계는 유로로 환전되고 회사의 회계의 결정을 위해 더해진다.

제 27 조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각 주식종목에 관하여 제안한 바에 따라 그 순투자이익의 처분방안에 관하여 결의한다.

회사의 순자산은 제 5 조에 기재된 최소자본금에 따라 배분될 수 있다.

이상의 순투자이익은 자본이익의 실현 또는 미실현 여부를 불문하고 배분될 수 있다. 그리고 배당은 실현 및 미실현 자본 손실을 공제한 후 실현 또는 미실현 자본 이익을 포함할 수 있다.

각 주식종목에 관하여 유지되는 평형계정으로부터의 충당에 의하여 각 주식 종목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주식 종목에 속한 주식들에 대한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해당 종목의 주주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각 주식 종목에 속하는 주식에 대하여 이사회가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배당은 해당 종목에 속한 주식의 표시통화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다른 통화로 지급되며, 그 지급시기 및 장소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사회는 지급 통화로 배당자금을 환전하는데 적용될 환율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배당은 해당 배당이 관련하는 종목의 추가주식의 인수 시에 등록 주식의 보유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재투자될 수 있다.

배당은 무기명 주식으로 재투자되지 않는다.

이사는 현금분배를 받을 권한을 가진 주주가 배당지급을 받기로 하지 않으면 어떤 종목의 주식에 자동적으로 재투자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금액이 이사회가 결정하여 모집서류에 공고한 금액 이하이면 배당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한 금액은 자동적으로 재투자된다.

제 28 조

회사는 하나 이상의 회사(“자산운용회사”)와 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동 계약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회사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관리하고, 그에 관하여 회사에 자문을 제공하고 회사를 지원한다.

또는 회사는 법률 제 13 장에 따라 인가된 운용회사(“운용회사”)와 투자운용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이 같은 운용회사로 하여금 회사에게 투자운용, 행정 및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선임할 수 있다.

운용회사(운용회사가 Schroder 그룹사인 경우에 한함)와 체결한 계약이 해지되거나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운용회사가 요구할 경우 회사는 본 정관 제 1 조에 명시된 것과 유사하지 않은 명의로 즉시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책임지는 보관회사를 선임하고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보유한다. 보관자의 선임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a) 보관자는 새 보관자가 선임 된 경우 이외에는 선임이 해지 되지 않는다;
- (b) 회사는 회사가 새 보관자를 선임하거나 보관자가 청산절차를 진행하거나 도산하거나 관리인을 두어야 하거나 보관회사의 선임이 해지 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자산의 손실이나 잘못된 충당으로 여겨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관회사의 선임을 해지 하지 않는다.

제 29 조

회사의 해산의 경우, 청산은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의 권한과 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가 지명한 1 인 이상의 청산인들 (자연인 또는 법인) 이 수행한다. 각 종목의 주식에 대한 청산금액은 각 종목의 주식의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제 30 조

정관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의 정족수 및 의결요건은 룩셈부르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회사가 홍콩의 증권 및 선물위원회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식의 75%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하며, (기타 종목의 주식에 대한) 특정 종목의 주식 보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도 그러한 특정 종목에 관하여 상기한 정족수 및 의결요건에 따른다.

제 31 조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모든 사항은 상업회사에 관한 1915 년 8 월 10 일자 제정된 법, 그 개정법률 및 법률에 의한다.